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7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하나은행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㈜하나은행에 대하여 「은행법」에서 정한 '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위반'으로 과태료 3억 1천 2백만원을 부과

○ **(수정심의)** 사후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동기를 하향(중→하)하고 최근 유사 사례와의 일관성·형평성을 감안하여 자진시정 감경(50%)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되, 사전·사후보고가 모두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과태료 총 63백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□ 「은행법」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,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,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,

○ 하나은행 ○○○ 등은 '20.11.18.~'23.9.21. 중 ○○○ 등 기관 ○개 및 개인 ○○○명에게 재산상 이익 ○○억원(○○건)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(○건)하거나,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음(○○건)

4. 근거법규

□ 「은행법」 제34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및 제2항,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5호의2,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0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) 제3호,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 4]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1호 및 제2호